

입소자의 권리

요양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.

- 인권 침해 및 무시 당하는 일 없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대우 받습니다.
-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
- 입소자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안내 받아야 합니다.
- 물리적 또는 화학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.
- 본인의 의료기록 또는 개인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이 직접 개인적인 일 또는 금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의 의학적 상태를 알고 치료 및 관리를 계획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사, 진료, 방문, 편지/메일 수신 또는 발신(미개봉) 등에 사생활을 보호 받습니다.
- 사회 활동 및 종교 활동을 본인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일별 요금이 적용된 서비스 또는 비용 등을 포함해 입소자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빠짐없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.
- 입소자는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해 시설 직원이나 다른 관계자에게 건의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시설 재배정이나 퇴소 결정에 대해서는 30 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고 이러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습니다.
- 모든 합당한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.

이 권리들은 입소자의 권리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. 입소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Executive Office of Elder Affairs
State Long Term Care
Ombudsman
One Ashburton Place Room 517
Boston, MA 02108**

**1-800-AGE-INFO
(1-800-243-4636)
또는 617-727-7750**

